

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안

1. 의결주문

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개정 법원조직법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윤리감사관의 소관 업무 및 지위를 정함(안 제2조)
-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두고, 각 분장사무를 정함(안 제3조)
- 윤리감사관과 그 소속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4.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

칙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,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윤리감사관)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(다만, 「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」 제5조에 의한 ‘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’를 제외한다),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,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.

제3조(보좌기관 및 분장사무)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,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.

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③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,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,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제4조(비밀준수 의무) 윤리감사관과 소속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분장사무표

명 칭		분 장 사 무
윤리감사관	윤리감사 총괄심의관	윤리감사관 업무 보좌
	윤리감사 제1심의관	1.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2. 법관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(법관에 대한 진정·청원 중 윤리감사관이 지정한 사건의 처리 포함) 3.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 4. 윤리감사관이 지정한 업무
	윤리감사 제1담당관	1.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.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3. 법관에 대한 진정·청원의 처리
	윤리감사 제2심의관	1. 법원직원, 집행관, 법무사 등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요인분석 2.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3.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 4. 일반사무감사(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), 기강감사 그 밖에 대법원장이 특명한 감사의 계획, 집행 및 그 밖의 사항의 처리 5.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
<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	
연락처	(02) 3480 - 1796